

학 칙

광 일 고 등 학 교

1982. 11. 30

(교행. 1041.1 - 1153)

제 1 차 개정 1983. 10. 12. (관리 1041.3 - 1255)

제 2 차 개정 1984. 09. 06. (관리 1041.1 - 1092)

제 3 차 개정 1984. 09. 28 (관리 1040 - 1194)

제 4 차 개정 1985. 12. 06 (관리 25412 - 1508)

제 5 차 개정 1986. 09. 25 (관리 25412 - 1123)

제 6 차 개정 1987. 09. 26 (관리 25412 - 926)

제 7 차 개정 1988. 04. 23 (관리 25412 - 343)

제 8 차 개정 1988. 09. 03 (관리 25412 - 638)

제 9 차 개정 1988. 12. 08 (관리 25412 - 866)

제 10 차 개정 1989. 08. 09 (관리 25412 - 491)

제 11 차 개정 1989. 10. 14 (관리 25412 - 620)

제 12 차 개정 1990. 08. 27 (관리 25412 - 583)

제 13 차 개정 1991. 06. 17 (관리 25412 - 413)

제 14 차 개정 1991. 08. 27 (행정 25412 - 540)

제 15 차 개정 1992. 06. 27 (행정 25412 - 429)

제 16 차 개정 1993. 08. 19 (행정 81414 - 721)

제 17 차 개정 1994. 09. 06 (행정 81414 - 683)

제 18 차 개정 1995. 05. 12 (행정 81414 - 365)

제 19 차 개정 1995. 09. 07 (행정 81414 - 777)

제 20 차 개정 1997. 01. 24 (행정 81414 - 93)

제 21 차 개정 1997. 12. 01 (행정 81412 - 1181)

제 22 차 개정 1998. 02. 02 (행정 81412 - 114)

제 23 차 개정 1998. 07. 08 (행정 81412 - 691)

제 24 차 개정 1998. 08. 10 (행정 81412 - 793)

제 25 차 개정 1998. 12. 05 (행정 81412 - 1196 }

제 26 차 개정 1999. 09. 03 (지원 81412 - 2052)

제 27 차 개정 2000. 12. 08 (지원 81412 - 3112)

제 28 차 개정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 - 1307)

제 29 차 개정 2004. 04. 19 (중등교육과 - 5033)

제 30 차 개정 2005. 03. 09 (학교운영지원과 - 3936)

제 31 차 개정 2006. 04. 12 (학교운영지원과 - 4881)

제 32 차 개정 2011. 04. 11 (인성복지과 - 3514)

제 33 차 개정 2014. 04. 03 (교원인사과 - 5637)

제 34 차 개정 2018. 12. 20

제 35 차 개정 2019. 04. 10

제 36 차 개정 2019. 09. 25

제 37 차 개정 2023. 10. 06.

제 38 차 개정 2023. 11. 22.

제 39 차 개정 2025. 02. 19. (중등특수교육과 - 2733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교는 광일고등학교라 한다. (변경인가 '84.09.28. 관리 1040-1194)

제 3 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812에 둔다.(변경인가 '95.05.12. 행정 81414-365)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 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3 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 6 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 7 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변경인가 : 관리 1041.3-1255('83.10.12), 관리 25412-1508('85.12.03), 관리 25412-866('88.12.08), 관리 25412-620('89.10.14), 행정 25412-540('91.08.27), 지원 81412-2052('99.09.03)]

제 8 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변경인가 : 관리 1041-638('84.09.06), 관리 25412-1508('85.12.06), 관리 25412-1123('86.09.25), 관리 25412-620('87.09.26), 관리 25412-583('88.09.03), 관리 25412-540('91.08.27), 행정 81414-683('94.09.06), 행정 81414-777('95.09.07), 행정 81414-93('97.01.24), 행정 81412-1181('97.12.01), 행정 81412-114('98.02.02), 행정 81412-1196('98.12.05), 지원 81412-2052('99.09.03)]

제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 9 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2.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3.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4.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5.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단,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허용)
6.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

제 9 조의 2(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3. 개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5. 학생이 매 학년도마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개인 체험학습의 일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총 개인 체험학습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 개인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5일 이내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 개인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10일 이내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을 비롯하여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에 직결된 중요한 날로 판단한 기간에는 개인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⑤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제 9 조의 3(과목의 수업량 기준)

1.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2. 1학년(또는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1회당 50분)이다.

3. 2·3학년(또는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9 조의 4 (수강신청 절차)

1. 다음 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수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변경	수업 운영 준비
[3, 4월] -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 [5, 6월] -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한 과목 안내 -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 상담 운영 [5, 6월] - 모든 선택 과목 대상 사전 수요 조사 진행 [7, 8월] - 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마련	[8, 9, 10월] - 1차 수강 신청 - 1차 수강 신청 결과 분석 - 2~3차 수강 신청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1차 확정 (개설 과목 확정 등) - 수강생 및 수업 반 편성 - 교과서 주문	[11월]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및 절차 안내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운영 - 수강 신청 변경 완료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최종 확정 - 차년도 소요 예정 교원 수 확인	[12, 1, 2월] - 수업 시간표 작성 (학생별, 교사별, 교실별) - 수업 운영 준비

제 9 조의 5(선택 과목의 개설 및 폐강)

1.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학생 선택 인원이 36명 이상인 경우 해당 과목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 선택 인원이 35명 이하일 경우의 과목 개설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 인원		
13명 이하	14명 이상~35명 이하	36명 이상
폐강	교과협의회 논의 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	개설

4. 학년말에 수강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개설에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선택 인원수가 해당 학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과목은 분반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위 2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수업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7. 학교는 위 6항의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한 사유를 학생에게 안내하고, 희망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제시하거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제 9 조의 6 (학생의 선택과목 변경)

1. 학생이 수강 신청을 통해 선택한 과목은 10월 말까지 학생, 학부모의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수강 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 변경, 수강 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1항의 수강 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의 12월 첫째주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2항에 따른 선택 과목의 변경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순서	절차	내용
1	학생의 과목 변경 희망	• 학생의 진로, 진학 및 적성과 관련해 과목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수
2	선택 과목 변경 희망원 작성	• 담임교사, 교과교사, 진로교사 등과 최소 2회 이상의 상담 실시 •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 • 변경 희망원을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학생, 학부모가 서명
3	선택 과목 변경 희망원 제출	• 선택 과목 변경 희망서를 담당부서(교육과정부)로 제출
4	결과 안내	• 선택 과목 변경 가능 여부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안내

제 9 조의 7 (공강 운영)

1.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 학생별 공강 시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공강 시간 지도(관리) 교사는 수업 시수, 담당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9 조의 7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1. 2025학년도부터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년에 편성된 성적을 산출하는 모든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2. 교과협의회를 통해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결재 후 시행한다.

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과목

②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 선정 방법

③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 및 내용

④ 기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0 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 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예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1 조(고사)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 12 조(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 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 13 조(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6월 21일

4. 여름휴가

5. 겨울휴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 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외에 비상재변,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수료 및 졸업

제 14 조(수료 및 졸업 등)

1.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3.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15 조의 2(명예졸업)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졸업장 수여와 관련하여 학교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 16 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17 조(입학방법) 본교는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제 18 조(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락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18 조의 2(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 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 나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편입대상자 : 전·편·재입학자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입학대상자 :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제1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서류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0 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와 재학 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

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모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 부모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 24 조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3.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6 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 9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 28 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여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9 조(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학년말 또는 학기말 평균성적이 당해 학년 또는 학급의 상위 5% 이내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 30 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 경과 후 2월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31 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9인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2 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3.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5.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 33 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 조치

제 34 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 35 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조치 할 수 있다.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36 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학칙개정

제 37 조(학칙개정 절차)

1.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2.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982. 11. 20. 교행 1041.1 - 1153)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983. 10. 12. 관리 1041. 3 - 1255)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09. 06. 관리 1041.3 - 1092)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09. 28. 관리 1040 - 1194)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 06. 관리 25412 - 1508)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09. 25. 관리 25412 - 1123)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09. 26. 관리 25412 - 926)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04. 23. 관리 25412 - 343)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09. 03. 관리 25412 - 638)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08. 관리 25412 - 866)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8. 09. 관리 25412 - 491)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0. 14. 관리 25412 - 620)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8. 27. 관리 25412 - 583)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06. 17. 관리 25412 - 413)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08. 27. 행정 25412 - 540)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06. 27. 행정 25412 - 429)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8. 19. 행정 81414 - 721)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9. 06. 행정 81414 - 683)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5. 12. 행정 81414 - 365)
이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09. 07. 행정 81414 - 777)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1. 24. 행정 81414 - 93)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01. 행정 81412 - 1181)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02. 02. 행정 81412 - 114)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07. 08. 행정 81412 - 691)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8. 10. 행정 81412 - 793)

이 학칙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05 행정 81412 - 1196)

이 학칙은 19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09. 03 지원 81412 - 2052)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08 지원 81412 - 3112)

이 학칙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3. 04 학교운영지원과 - 1307)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4. 29 중등교육과 - 5033)

이 학칙은 200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3. 09 학교운영지원과 - 3936)

이 학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4. 12 학교운영지원과 - 4881)

이 학칙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4. 11 인성복지과 - 3514)

이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4. 03 교원인사과 - 5637)

이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04. 10)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9. 09. 25)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6 교권보호업무 TF팀-9)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5. 02. 19 중등특수교육과-27398)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